

■ 치과 칼럼

치아 건강 상식 10 가지

1. 잇몸 치료를 받으면 치아가 약해진다?
초음파를 이용해 치석과 치태를 제거함으로써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을 없애주는 게 잇몸 치료 또는 딥클리닝의 효과입니다. 클리닝 후 치아가 더 흔들림을 느끼거나 시린 증상은 치아 뿌리에 붙어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부엌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그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치주질환의 주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므로써 더 이상 잇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잇몸치료 입니다.
2.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안 좋아진다?
오랜 기간 동안 치아와 잇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잇몸뼈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잇몸도 같이 주저 앉으며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3. 잇몸이 약해 임플란트가 어렵다?
임플란트를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받쳐주는 치조골이 내려앉아 발치를 해야 될 때 입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뼈이식으로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착상되도록 합니다. 또한 요즘은 Cgf 라는 자가 이식 수술의 도입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봅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라든지 특정한 약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잇몸뼈의 괴사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잇몸이 약해서 불가능한 임플란트 시술은 없습니다.
4. 잇몸질환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광고에 나오는 잇몸 치료제는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잇몸질환의 주범인 치석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5. 전동칫솔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좋다?
손으로 꼼꼼히 하는 게 낫고 다만 편리함에 있어서 전동칫솔이 우위에 있지만 광고에 나오는 진동 솔의 효과는 의심스럽습니다. 필자는 한 번도 진동칫솔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6. 치아를 세게 닦을수록 이가 더 깨끗해진다?
좌우로 심하게, 특히 칫솔모가 두꺼운 칫솔로 세게 닦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에 마모가 생겨서 치아 손상을 가져와 이 시림을 유발하고 심하게는 신경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로 위-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꼼꼼히 양치해야 합니다.
7. 양치질은 아침-점심-저녁 3번만 하면 된다?
치석을 일으키는 근원을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합니다. 이 치태는 어떤 것을 먹어도 15 분 내에 생성이 되고 이것이 제때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침과 반응하여 치석이 형성 됩니다. 주식 외에도 우리가 중간에 먹는 간식 후에도 양치를 하는게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8. 유치는 빠지는 치아니 치료를 안해도 된다?
특히 유치에 생기는 충치를 방지하면, 진행 속도가 빨라 신경 치료 또는 이른 발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영구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올 수 있고 아예 못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껌을 자주 씹으면 치아에 안 좋다?
물론 당분 함유가 많은 껌은 충치를 일으킬 요소가 있지만 십 분 이상 껌을 씹으면 침을 분비시키고 이로 인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0. 칫솔의 머리가 클수록 좋다?
큰 칫솔이라고 더 많은 면적을 잘 닦을 거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작은 머리 칫솔이 어금니 뒤쪽 또는 치아 사이, 치아의 위와 아래, 안쪽 부분을 꼼꼼히 닦는데 더 좋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2001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시민권법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

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함을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도 N-400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아닌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고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